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국제부

발 신 :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24. 5. 16.(목)

전송매수 : 총 13매(붙임문서 포함)

[보도자료]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2024년 7월 10일에서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가오는 2024년 5월 20일, 위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안)을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전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제외하는 등
인권위 스스로 수차례 해온 권고와 국제기준에 명백히 반하도록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후퇴시켰습니다. 최근 2차례 있었던 고문방지협약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독립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수정·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인권위의 독립보고서가 또다시 왜곡,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에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모임에서는 **2024년 5월 16일(목) 13:30**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원들의 후퇴없는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 제출 의결을 촉구하고 개별 인권위원들에게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기자회견은 주최한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서채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는 강지윤 미국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강지윤 변호사는 “국제인권조약의 취지와 중요성을 옹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오히려 조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약들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강지윤 변호사는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유엔 조약기구가 실적경쟁을 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로서 유엔 조약기구를 폄훼하거나, 유엔 조약기구의 권한과 권고를 폄하하는 상임위원들의 발상과 발언은 “국제인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에서 활동하는 한림세영 상임활동가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9차 상임위원회 당시 김용원, 이충상 위원의 문제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한림세영 활동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의 독립보고서 내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보장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이충상 위원에 대해 “소위 인권위원이라는 자가 이주민들을 저출생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폐단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책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하는 국제협약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검열, 축소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다며 오는 5월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의 제9차 전원위에서 고문방지협약 권고 이행 현황에 관한 포괄적인 인권위적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은 두 발언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전달했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서한 낭독에 앞서 독립보고서 퇴행의 책임은 비단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그 두 위원에게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는 남규선, 김용원, 이충상 3명의 상임위원, 김수정,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원민경, 김용직, 강정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전달한 서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들에게는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기준으로 이를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를 폄하하거나 국제인권조약이 형성한 법리 및 권고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의 요청을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 선출한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의 법지식을 부정하고,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삼는 전 세계 사법기관을 폄하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사무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을 기준으로 이번 독립보고서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독립보고서가 후퇴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인권후퇴의 역사로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5.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은 2024년 5월 20일(월) 전원위원회에 방청을 할 예정이고, 인권위원 한 명, 한명이 인권을 기준으로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사무국은 2024년 7월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심의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번 독립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제역할을 하지 않고 국제인권조약을 폄훼한 인권위원들의 발언도 기록하여 유엔과 다른 국제인권단체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발언문
3. 사무국 서한

2024년 5월 16일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붙임1 기자회견 순서

1. 제목

“인권위원회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2. 일시 & 장소: 2024. 5. 16.(목) 13:30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주최: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4. 프로그램:

- 사회: 서채완 변호사(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 발언1: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강지윤 미국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2: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 주장의 문제점 / 한림세영 활동가(민변 국제팀)
- 서한 낭독 및 전달: 강솔지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방학 활동가(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발언1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강지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입니다. 이처럼 헌법과 국내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하고 향상해야 할 ‘인권’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듯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제국주의, 식민주의 등을 경험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인 ‘국제인권조약’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존중하여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여덟 개의 조약에 가입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는 조약별로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 ‘조약기구’를 설립하여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조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들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심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당 조약과 관련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권고를 정리하여 보고서 형태로 ‘조약기구’에 제출합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마련된 보고서는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신력 있는 문서로, 조약기구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내실있는 권고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국제인권기구들과 협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뿐만 아니라 국가별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근간이 되는 ‘파리 원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보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의 취지와 중요성을 옹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인권위원들은 오히려 이러한 조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약들의 보호 범위를 축소하고, 조약기구의 중립성을 폄하하여 국제인권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은 조약기구가 국내 여러 인권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고를 ‘해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심히 의문’이라며, 다른 나라의 심의에서도 국가인권기구가 ‘오만가지 이슈’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지 알아볼 것을 지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기구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충상 위원은 한술 더 떠서, ‘여러 유엔 위원회들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많이 쌓기 위해서 이런저런 너무 지나친 권고를 한다’며 ‘여러 국제기구 중 이런 진보적인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의 권고를 우리가 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약별 위원회의 중립성과 그 권고들의 정당성을 폄하하였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 권고들이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위원회가 ‘뭘 그렇게 나답니까?’라고 발언하여 방청하고 있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인권위원의 발언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인권위원의 근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망언입니다.

위원들의 주장에 반박하자면, 조약기구는 해당 국제인권조약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기구이며, 조약기구 소속 위원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약 가입 국가의 국민 중 해당 국가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고 선출된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들입니다. 특정 조약기구가 진보적이라거나 조약기구 간 실적 경쟁을 한다는 발상은 국제인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처럼 국제인권조약 역시 ‘살아있는 문서’로 그 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국제사회에서 점차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조약기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심의 대상 국가의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면,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고, 조약기구의 정당성을 폄하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심의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향상하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2025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자발적 공약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조약기구 심의 절차에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보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국제인권기구를 폄하하고,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축소,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용과 평판을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실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약칭 ‘고문방지협약’ 심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이 논의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위원은 위와 같이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보고서안에 포함된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와 권고를 축소,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인권위원의 책무를 저버린 일부 인권위원의 행태를 고발하고 규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안이 내용의 축소, 왜곡 없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주시길 모든 인권위원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2 김용원, 이총상 인권위원 주장의 문제점

한림세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 차례의 공식 회의 끝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의 독립보고서 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로의 형법 297조 개정’ 등 한국 사회 내 여성인권 실태 개선에 필수적인 권고 내용을 삭제, 수정하여 의결시켰습니다. 이는 인권 이슈에 대한 진취적인 분석과 개입으로 인권 정책과 실태 개선에 앞장서야 할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책무를 방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인권위는 오는 7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제출할 독립보고서(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인권위의 제9차 상임위원회 때 진행된 논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권위 일부 위원들의 국제인권규범과 제도에 대한 인식은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이총상 위원은 ‘유엔의 고문방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실적을 쌓고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권고한다’며 국제기구가 마치 실적내기 경쟁을 위해 인권을 논한다고 매도하였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고문방지위원회에 보내는 보고서에 국내의 오만가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게 맞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인권 현안에 대한 내용을 폭 넓게 다루는 것에 반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망언이었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 두 인권위원들은 황당한 주장과 요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총상 위원은 인권위 독립보고서 중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보장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급여 액수에 관해서 고문방지위원회가 나서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총상 위원은 지난 3월 11일에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한 달에 칠십만 원, 백만 원 주고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쓰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좋다고 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2년, 2018년에 한국 사회 내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주민의 권리를 외면한 채로 외국 인력의 규모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필수 정책 부재 및 관련 예산 삭감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를 조장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번 인권위 독립보고서가 개선을 요구해야 할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입니다. 소위 인권위원이라는 자가 이주민들을 저출생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폐단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제9차 상임위에서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 권고를 강력 반대하였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현재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엄연히 존재’하며, ‘대한민국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만큼 국가 안보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유권조약위원회는 지난 32년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개정할 것을 이미 5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 인권위 스스로도 2004년부터 가장 최근 2022년 8월,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듯, 인권위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의 전 영역을 주시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앞장서서 정부에, 의회에,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하는 국제협약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검열, 축소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전원위 때마다 각종 트집잡기, 의도적 회의 지연, 망언을 이어나가며 본인들의 잣대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앞다투어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충상 위원이 언급한 ‘실적 쌓기 경쟁’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제8차 전원위 당시에도 두 인권위원의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인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의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재상정되었습니다. 오는 5월 20일, 제9차 전원위에서 인권위는

고문방지협약 권고 이행 현황에 관한 포괄적인 인권위적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들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해 후퇴 없는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고문방지협약 독립보고서 심의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분들께 드리는 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분들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기구로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독립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4. 5. 20.(월) 독립보고서(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독립보고서가 ‘인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되기를 기원하며, 인권위원분들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원의 책무에 걸맞는 역할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규정하는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는 위 조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증진하고 보호해야할 인권이며, 고문방지협약이 형성하는 법리와 그에 따른 요청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존중해야할 준거기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인권위원은 고문방지협약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전원위원회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인권위원이 국내법이나 판례를 근거로 고문방지협약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판단을 목도한바 있습니다. 인권위원 분들께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고려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와 같이 인권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제인권규범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고문방지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기구를 실적 경쟁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구로 폄하하고, 국내법적 지식으로 고문방지협약의 내용과 위원회의 권고를 부인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의 요청을 몰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이 선출한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법지식을 부정하는 것이자, 고문방지협약과 그로부터 형성된 규범을 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전 세계의 사법기관을 폄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인권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문방지협약의 적용범위와 그 내용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 보호를 광범위하게 약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가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 및 집행해야 한다는 한 위원의 발언은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전 권고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시민사회는 상임위원회에 이어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한 명, 한 명이 인권을 기준으로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독립보고서(안)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일반논평, 권고를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인권위원이 ‘인권’이 아닌 자의적 기준으로 독립보고서를 평가한다면, 혹은 독립보고서 후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다면, 이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권후퇴를 보여주는 예로서 국제사회에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권위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을 기준으로 이번 독립보고서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6일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올림